

2007년 6월 30일

슈와브 대사
미합중국 무역대표
워싱턴 디씨

슈와브 대사 귀하,

금일 양국 정부간에 서명된 자유무역협정의 제12장(국경간 서비스무역)에 관한 협상과정에서, 대한민국 대표단과 미합중국의 대표단은 각자의 정부가 우편 서비스에 관하여 계획하고 있거나 현재 수행하고 있는 규제개혁절차와 그 절차가 경쟁적인 특급배달서비스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를 논의하였습니다.

이러한 논의의 맥락에서, 대한민국은 자국의 우편개혁계획의 여러 측면 중에서 다음 측면을 제시하였습니다.

대한민국은 허용되는 민간 배달서비스의 범위를 증대하기 위하여 대한민국 우정당국의 독점에 대한 예외를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대한민국의 우편 규제 체계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계획을 수립하고자 한다. 이는 우편법, 관련 법률 또는 그 하위 규정에 대한 개정을 통하여 이루어질 것이다.

가. 그러한 개정이 입법화된 후, 민간 배달서비스 공급자가 취급할 수 있는 품목은 중량·가격 또는 그 조합과 같은 객관적인 기준에 기초하여 분류될 것이다. 그러한 개정의 성격과 범위를 결정함에 있어, 대한민국은 국내시장 조건, 우편 자유화를 이룬 다른 국가의 경험과 보편적 서비스를 보장할 필요성을 포함하여 다양한 요소를 검토할 것이다. 대한민국은 향후 5년 이내에 이러한 개정을 이행할 계획이다.

나. 대한민국은 또한 시간을 갖고 우편 및 특급배달 서비스를 위한 자국의 규제체계의 독립성 문제를 검토할 것이다. 그러한 개혁 후 특급배달 서비스의 규제기관은 모든 우편 또는 다른 배달 서비스의 공급자로부터 분리되고 그들에게 책임을 지지 아니할 것이다. 규제기관의 결정과 그 기관에 의하여 이용되는 절차는 모든 시장 참여자에 대하여 공평하고 투명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개편된 기준 및 규제체계를 적용함에 있어, 대한민국은 대한민국 내 모든 우편 및 특급배달 서비스 공급자에게 비차별적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김 현 종